

부천시 하수도 공기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0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0. 16)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배덕기)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
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11조)
·제3조제1호 → 제5조제1호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부천시하수도공기업”을 “부천시 하수도공기업”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행정구역안으로”를 “행정구역 안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원의 범위안에서”를 “정원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1항의 경우”로 하고, “거절하지 아니한다”를 “받아들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본문 중 “회계년도”를 각각 “회계연도”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하수도법 및 기타”를 “「하수도법」 및 그 밖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

제12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

로 하고, “10분의 1이하”를 “10분의 1 이하”로 하며, “의한 계산 대상금액”을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1항에 따른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3호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매사업년도”를 “사업 연도”로 하며, “동년”을 “같은 해”로 하고,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2항에 따

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97호
의결 년월일	2009. 11.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0. 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
(안 제11조)
·제3조제1호 → 제5조제1호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부천시하수도공기업”을 “부천시 하수도공기업”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행정구역안으로”를 “행정구역 안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원의 범위안에서”를 “정원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1항의 경우”로 하고, “거절하지 아니한다”를 “받아들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본문 중 “회계년도”를 각각 “회계연도”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하수도법 및 기타”를 “「하수도법」 및 그 밖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

제12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

로 하고, “10분의 1이하”를 “10분의 1 이하”로 하며, “의한 계산 대상금액”을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1항에 따른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3호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매사업년도”를 “사업 연도”로 하며, “동년”을 “같은 해”로 하고,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2항에 따

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u>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u>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목 적) ----- ----- ----- ----- 「<u>지방공기업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 따라 ----- -----.</p>
<p>제2조 (사업의 범위) <u>부천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u>은 다음 <u>각호</u>의 사업을 행한다.</p> <p>1. · 2. (생략)</p> <p>3. <u>기타</u>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p>	<p>제2조(사업의 범위) <u>부천시 하수도 공 기 업</u> -----<u>각</u> <u>호</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u> <u>밖에</u> -----</p>
<p>제3조 (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 구역은 부천시 <u>행정구역안</u>으로 한다.</p>	<p>제3조(사업구역) ----- ----- <u>행정구역 안으</u> <u>로</u> ----.</p>
<p>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p> <p>② (생략)</p>	<p>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 -----<u>1</u> <u>명</u>-----.</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u>정원의 범위안에서</u>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조직) ①</p> <p>-----</p> <p>-----</p> <p><u>정원의</u> <u>범위에서</u></p> <p>-----</p> <p>-----.</p> <p><삭 제></p>
<p>제6조 (인사) ① (생략)</p> <p>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u>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p>	<p>제6조(인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u> <u>경우</u></p> <p>-----</p> <p>----<u>받아들여야 한다.</u></p>
<p>제7조 (관리자의 책임) <u>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u>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관리자의 책임) <u>법 제48조에</u> <u>따른</u></p> <p>-----</p> <p>-----</p> <p>-----.</p>
<p>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u>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u>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u>당해 시장의 승인</u>을 얻어야 한다.</p>	<p>제8조(기업관리규정) ----- <u>법 제11조에</u> <u>따른</u></p> <p>----- <u>시장</u></p> <p>-----.</p>
<p>제9조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은 <u>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u>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u>충당함</u>을 원칙으로 한다.</p>	<p>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p> <p>-----<u>법 제13조에 따</u></p> <p><u>라</u></p> <p>-----</p> <p>-----.</p>

현행	개정안
<p>②조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p>	<p>② ----- 각 호에 따른 ----- -----.</p>
<p>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p>	<p>③ ----- ----- 그 밖에 .</p>
<p>④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p>	<p>④ ----- ----- ----- 그 밖에 ----- -----.</p>
<p>제10조 (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p>	<p>제 1 0 조 (회 계 연 도)----- 회계연도 ----- 회계연도-- 따른다.</p>
<p>제11조 (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부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부천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p>	<p>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 ----- 따라----- 각 호 ----- -----.</p>
<p>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p> <p>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p> <p>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p>	<p>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p> <p>2. ----- 따라 -----</p> <p>3. ----- 그 밖에 ----- -----</p>

현행	개정안
<p>제12조 (출자) ①부천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p> <p>1.~3. (생략)</p> <p>②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p>	<p>제12조(출자)① ----- 각 호 -----.</p> <p>1.~3. (현행과 같음)</p> <p>② ----- 제1항 각 호에 따라 -----.</p> <p>③ 제2항에 따른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 해당 -----.</p> <p>④ 제3항에 따른 ----- 해당 연도 ----- 10분의 1 이하 ----- 따라 계산된 금액 -----.</p>

현행	개정안
<p>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p> <p>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p> <p>2. (생략)</p>	<p>제13조(재정지원) ---각호</p> <p>-----</p> <p>-----</p> <p>-----</p> <p>-----</p> <p>-----</p> <p>1. 제11조에 따른 -----</p> <p>2. (현행과 같음)</p>
<p>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제1항에 따른 경우</p> <p>-----</p> <p>-----</p> <p>-----</p> <p>-----</p> <p>-----</p>
<p>제15조 (잉여금의 처분) (생략)</p> <p>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p> <p>2. (생략)</p> <p>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p> <p>4. (생략)</p>	<p>제15조 (잉여금의 처분) (현행과 같음)</p> <p>1. ----- 따른 -----</p> <p>2. (현행과 같음)</p> <p>3. 제12조제4항에 따른 -----</p> <p>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p> <p>-----</p> <p>-----.</p>
<p>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p> <p>3.4. (생략)</p> <p>5.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p> <p>-----</p> <p>-----</p> <p>-----</p> <p>각 호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p> <p>3.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p>
<p>제1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 각 호</p> <p>----- 사업연도-----같은 해</p> <p>-----다음 연도</p> <p>-----.</p>

현행	개정안
<p>1. · 2. (생략)</p> <p>3. <u>기타</u>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시장은 관리자가 <u>제1항의 규정</u>에 의한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p> <p>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u>제34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생략)</p> <p>②<u>제1항의 규정</u>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u> <u>밖</u>에</p> <p>-----</p> <p>-----</p> <p>-----</p> <p>② ----- <u>제1항에 따른</u></p> <p>-----</p> <p>-----</p> <p>-----</p> <p>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u>제34조제2항에 따라</u></p> <p>-----</p> <p>-----</p> <p>-----</p> <p>-----</p> <p>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관계 법령발췌서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되는 경비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